

국회에서 의결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7년 12월 12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
송 영 무

국방부장관

●법률 제15166호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편에 제1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5조의3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징벌위원회 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. <법제처 제공>